

Korean Tax Update

September 2021, Issue 87

[조세뉴스]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국세청) [전문보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9.2.(목)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 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신중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으로,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국세청) [전문보기]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함.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임.

[판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제 6 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납세자 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 두 35695 전원합의체 판결

-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임.

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과 동일하므로, 결국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전 해당 시행령 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편,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 시 종전 예시적 성격이었던 법 제41조(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 두 62488 판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과세실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0년, 2011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평가손익을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점, 평가손익은 손익의 최종 실현 전 단계에서 장부상으로만 인식되는 미실현손익으로 최종적으로는 거래손익으로 실현되고,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통산하는 것이 타

당한 점,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품의 거래와 연계되어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초상품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초상품인 외화현물 관련 손익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례]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 서 0560, 2021. 8. 12.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이연은 납세자(출자주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주회사는 취득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무조정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취득세무조정을 전제로 양도세무조정 시 환입되어야 할 자산조정계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산조정계정은 쟁점주식을 세무상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음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처분순서를 준용하기 보다는 과세이연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하는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보다 합리적인 점,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출자주주에게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법규에 대한 특례성격(자산조정계정 설정)으로 그 이후의 환입방법(자산조정계정 상계) 또한 일반적인 조세법규 보다는 과세이연과 관련된 특례성격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한 점,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지주회사가 아닌 출자주주임에도 지주회사에게 취득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지주회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그 부담을 완화할 명분이 충분하고,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도 일반적인 주식의 처분순서가 아닌 사후관리로서의 주식 처분순서를 준용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출자주식이 아닌 기타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기획재정부법인-17, 2021. 1. 11.).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 서 1193, 2021. 9. 7.

- 처분청은 대법원 변경판결 이전의 공급분은 종전의 판례에 따라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할 것인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2017서1078, 2018. 10. 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보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고(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기획재정부는 위 판례변경의 취지에 따라 2017. 9.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 9. 1.).
- 한편, 국회는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신설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2020. 12. 22. 동 규정을 삭제함.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 년 귀속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서 3199, 2021. 9. 2.

-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 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재처분을 한 점, 재차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재처분에 앞서 과세에

고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였으므로 이 건 재처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소득처분 관련 인정상여 소득금액이 부정행위를 동반한 가공경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201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여기에 부과제척기간 관련 조항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규정 단서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소득 귀속의 불분명 여부와 상관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서울고등법원 2017누88574, 2018. 8. 24.).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지 2083, 2021. 9. 8.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및 제103조의24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에만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예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

-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 8. 26.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 §16의 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 8. 3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 제 16 조의 3, 제 16 조의 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TKC 코멘트]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법령해석소득2020-1296, 2021. 3. 8.).
-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사전법령해석소득2020-364, 2020. 6. 12.).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시 근무기간이 1 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2021. 9.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 조의 32 제 8 항 제 2 호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판단 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 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